

(議事棒 3打)

11. 中小企業育成資金造成및融資支援에따른利子差額補填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55分)

○議長 金瓌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11項 中小企業育成資金造成 및 融資支援에 따른 利子差額補填同意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生活環境委員會 崔 浩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 浩議員 生活環境委員會所屬 崔 浩議員입니다. 오늘 本議員이 中小企業育成資金造成 및 融資支援에 따른 利子差額補填同意案에 대하여 우리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同意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에서는 中小企業의 育成 發展과 經營의 安定을 위하여 서울特別市長과 市金庫인 商業銀行과의 協約에 따라 1993年度부터 1995년까지 每年 100億원씩 總 300億원의 金融資金을 財源으로 中小企業 育成資金을 商業銀行에서 出捐 造成하여 資金難을 겪고 있는 市內 中小製造業體에 融資支援하기로 하였는바, 그 資金의 融資支援에 따른 貸出金利의 差額을 우리 市議會의 同意를 받아서 補填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育成資金의 用途는 運轉資金으로 하며 貸出限度는 業體當 1億원 以內로 하고 償還期間은 1年後 一時償還 原則으로 하되 30% 以上 償還을 完了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延長이 可能하도록 하였습니다. 貸出金利는 당초 年 12%였으나 93年度 1月 26日 政府의 公金利 引下措置로 商業銀行과 再協議하여 당초 金利보다 1.5% 引下된 年利 10.5%로 確定 中小企業體에서는 서울시 中小企業育成基金의 利子率과 같은 8%를 負擔하고 그 差額 2.5%는 市費에서 補填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93年度 融資金 100億원에 대한 利子差額 補填은 이미 93年度 豫算에 4億원이 計上되어 있으나 向後 2年間 93年과 95

年分 各 100億원씩 總 200億원에 대한 利子差額 補填所要額 5億원을 市費로 支援해 주기 위하여 地方自治法 第35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의 同意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市金庫인 商業銀行의 利子率이 너무 높고 償還期間이 1年後 一時償還 原則으로 30% 以上 償還完了한 경우 2회에 한하여 延長이 可能하게 되어 있습니다. 資金이 부족한 中小企業體에서는 高率의 利子 負擔과 너무 짧은 償還期間으로 融資金 償還에 많은 負擔이 있으므로 向後부터는 償還期間을 최소한 2年 거치 5年 分割 償還 도록 하고 더 낮은 利子率이 適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市金庫인 商業銀行과 새로운 關係 定立이 特別히 要請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本 同意案을 1993年 2月 23日 第1次 生活環境委員會에 上程하여 서울特別市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후 質疑答辯의 過程을 거쳐 세밀히 審査 議決한 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本會議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議員 여러분께서는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査報告드린 대로 審査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中小企業育成資金造成및融資支援에 따른利子差額補填同意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瓌會 그러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査한 中小企業育成資金造成및融資支援에따른利子差額補填同意案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용자지원에

<p style="text-align: center;">따른이자차액보전동의안</p> <p>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상업은행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연리 10.5%의 조건으로 '93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00억원 씩 총 3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 중소기업체에 연리 8%로 융자지원함에 있어 향후 2년('94~'95년)간의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2.5%에 해당하는 금액 5억원을 시비로 지원함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의 의거 동의함</p>	<p>○議長 金瓌會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1993年度 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 異議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 style="text-align: center;">'93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p>
<p>12. 1993年度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7時)</p> <p>○議長 金瓌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12項 1993年度 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都市整備委員會 金東洙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金東洙議員 都市整備委員會所屬 金東洙議員입니다. 本議員이 本會議場의 여러 同僚議員 앞에서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1993年度 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p> <p>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內容은 市長이 93年度 市有財産管理計劃을 執行함에 있어 都市計劃事業인 住宅改良再開發事業 施行者 및 占有者에게 財産을 賣却하여 再開發事業이  원활하게 進行될 수 있도록 支援하고 한편 再開發事業施行에 의거 建立된 住宅을 公共賃貸住宅으로 買入하여 區域內 賃入者에게 賃貸할 수 있도록 財産을 買入하는 것으로 이 管理計劃은 關聯規定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委員會에서 同意 決定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우리 委員會에서 決定한 同意案이 本會議에서 採擇되어 住宅改良再開發事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93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인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국공유지를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구역내 세입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내용으로 하는 '93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p> <p>○'93시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 6건 토지, 건물 1,508가구</li> <li>• 매각 10건 토지 404필지 229,303.4㎡</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